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83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 출 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 심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야간 이면도로상의 많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화재 등 긴급제해 발생시 구조차량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 이면도로상 주차분쟁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에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융자해줌으로써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내집안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안 제3조제1항제5호)
- 내집안 주차장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안 제4조)
 -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내집안 주차장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안 제5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30% 이내로 한다.
- 내집안 주차장 융자금의 한도는 설치비용의 60% 이내로 한다.

○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 (안 제6조)

-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되,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 (안 제7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 상환기간 중에 내집안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기 간 : '98. 8. 1 ~ 8. 20 (20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제6항
안산시주차장조례 제21조제1항및제2항
- 소요예산 : 보조금 5,400,000원 (600,000원 × 9개소)
- 참고사항 : '98 내집안 주차장 확보계획(경기도 교기91117-2278)호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

제4조 내지 제7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4조 내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5조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 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용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30% 이내로 한다.

③ 내집안 주차장 용자금의 한도는 설치비용의 60%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1개소의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과 용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제6조 (용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 ①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 (보조금 및 용자금의 반환)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내집안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보조신청서

1. 신청인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2. 보조금 신청액 :

3.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위치 :
- 대지면적 : m² (평)
- 주차장 설치개요 : 연면적 m² (평)

4. 설치자금 소요내역

| 용 도 | 총소요액 | 자기자금 | 보조신청자금 | 비 고 |
|--------|------|------|--------|--------|
| 설치자금 | | | | |

5. 첨부서류

설치전, 설치중, 설치후 사진 1매씩.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용자신청서

1. 신청인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2. 용자금 신청액 :

3.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위치 :
- 대지면적 : m' (평)
- 주차장 설치개요 : 연면적 m' (평)

4. 설치자금 소요내역

| 용 도 | 총소요액 | 자기자금 | 용자신청자금 | 비 고 |
|--------|------|------|--------|--------|
| 설치자금 | | | | |

5. 첨부서류

설치전, 설치중, 설치후 사진 1매씩.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용자금을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 하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세출) ① (생략) 1~4 (생략)</p> <p>(신설)</p> <p>(신설)</p> | <p>제3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p> <p>5. <u>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u></p> <p><u>제4조(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p>1. <u>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u></p> <p>2. <u>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u></p>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u>제5조(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30% 이내로 한다.</u></p> <p><u>③ 내집안 주차장 융자금의 한도는 설치비용의 60% 이내로 한다.</u></p> <p><u>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1개소의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과 융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u></p> |
| (<u>신 설</u>) | <p><u>제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u></p> <p><u>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u></p> <p><u>②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u></p> |
| (<u>신 설</u>) | <p><u>제7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u></p> <p><u>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u></p>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제4조 ~ 제7조 (생략)</u></p> | <p><u>1. 보조금 또는 용자금용 목적 외에 사용할 때</u> <u>2. 상환기간 중에 내집안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u></p> <p><u>제8조 ~ 제11조 (현행 제4조내지 제7조와 같음)</u></p> |

〈 관계법령발췌서 〉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제6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1항 2항

제21조 (보조 및 융자) ①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을 심사하여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정한다.